

## 6.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중개정령

환경부령 제66호 1999. 2. 13

###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1999. 2. 8, 법률 제5877호)으로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지정제가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그 소속인력에 대한 교육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지정제가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절차 등 이 규칙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사무실 및 실험실의 규모에 관한 등록기준을 폐지하는 등 그 등록요건을 완화함(제5조 내지 제8조, 제24조, 별표 2 및 별표3).
- 나.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내용에 관한 이행의무를 승계받은 사업자의 승계에 관한 서류제출기간을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연장하고, 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준수사항을 폐지함(제12조의2 및 현행 제13조제2항 삭제).
- 다.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소속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기간을 14일이내에서 3일로 단축함(제15조제2항).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공청회개최결과통지서) 영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개최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사무실·실험실과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실험실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장비를 보유한 평가대행자 또는 측정대행자(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소음·진동규제법 제47조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측정업무 전부에 관한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제6조의 제목중 “지정신청등”을 “등록신청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지정을 받고자”를 “등록하고자”로, “평가대행자지정신청서”를 “환경영향평가대행자등록신청서”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장비명세서

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평가대행자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신청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환경영향 평가대행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중 “지정사항변경신청”을 “등록사항 변경신청”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변경지정을 받아야”를 “변경등록을 하여야”로 하며, 동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평가대행자로 등록한 자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대행자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환경영향평가대행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받거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평가대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2조의2 본문중 “10일”을 “15일”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3조의2중 “15일”을 “20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14일이내”를 “3일”로 한다.  
제24조중 “평가대행자의 지정신청”을 “평  
가대행자의 등록신청”으로, “변경지정신청”  
을 “변경등록신청”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중 “지정기준”을 “등록기준”  
으로 하고, 동표 제1호의 기술능력란의 바  
목중 “2인”을 “1인”으로 하며, 동표 제2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장비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수질오염공정시  
험방법 및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 의  
하여 환경영화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  
정에 의한 환경기준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 다만, 당해 장비를 보유한  
평가대행자 또는 측정대행자와 측정대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측정에 필

요한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제1호의 조사기간란에 단서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의 경우 공사완료후에는 입주율  
이 70퍼센트에 도달한 다음해에 한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되, 공사완료  
후 5년이 되는 해에는 입주율이 70퍼센  
트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환  
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별표 3]

###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9조제1항관련)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이전 최근 2년간  
[제2호(7)의 경우에는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다. 영업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상속 또는 합병전에  
당해 영업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

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라.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관련조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3조	등록취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13조	등록취소			
(3) 최근 1년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3조	등록취소			
(4)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13조	등록취소			
(5) 도급받은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법 제13조	업무정지 6월	등록취소		
(6) 업무정지처분기간중 신규계약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한 경우	법 제13조	업무정지 6월	등록취소		
(7) 등록한 후 2년이내에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이상 환경영향평가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13조	경고	경고	등록취소	

위반사항	관련조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8)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여향평가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법 제13조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등록취소
(9)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가 등록요거네 미달된 경우	법 제13조				
(가)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나)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등록취소			
(다) 1월이상 사무실 또는 실험실이 없는 경우		업무정지 6월	등록취소		
(라) 구비하여야 할 장비가 부족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마) 구비하여야 할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등록취소			
(10)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을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불참하게 한 경우	법 제13조	경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1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	경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12)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법 제13조	경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별지 제5호]

환경영향평가대행자		<input type="checkbox"/> 등록	처리기간							
		<input type="checkbox"/> 변경등록	등록	변경등록						
			21일	10일						
신청인	①기관(업체)명칭									
	②대표자 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 : )								
	⑤사무실소재지	(전화 : )								
	⑥실험실소재지	(전화 : )								
	⑦변경사유									
	<input type="checkbox"/> 등록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을 <input type="checkbox"/> 변경등록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table border="1" style="float: right; margin-right: 20px;"> <tr> <td colspan="2">수 수 료</td> </tr> <tr> <td>등록</td> <td>변경등록</td> </tr> <tr> <td>10,000원</td> <td>5,000원</td> </tr> </table>					수 수 료		등록	변경등록	10,000원	5,000원
수 수 료										
등록	변경등록									
10,000원	5,000원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장비명세서(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1부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 원본(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51318-29311번

210mm×297mm

'99.1.22. 개정

(인쇄용지 54g/m<sup>2</sup>)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등록번호	환경영향평가대행자등록증	
제 호		
①기관(업체) 명칭		
②대 표 자 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④기관(업체) 소재지	(전화 : )	
⑤사무실 소재지	(전화 : )	
⑥실험실 소재지	(전화 : )	
⑦기 타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환경 관리 청장      [인]  
지방환경관리청장

51318-29411민  
'99.1.22. 개정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120g/m<sup>2</sup>

## &lt;변경사항&gt;

(뒷쪽)

연 월 일	내 용	확인

## &lt;행정처분사항&gt;

연 월 일	내 용	확인